주식회사 코크렙제7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026년 제1차 종류주 주주총회 의사록

1. 일　　시 : 2026년 11월 13일 (금) 오후 3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아이콘삼성)㈜코람코자산신탁 내 회의실
3. 발행주식수 : 총 1,050,000주 중 의결권이 있는 주식 1,050,000주
4. 출석주주수 : 총 1명 중 1명
5. 출석주식수 : 의결권이 있는 주식 총 1,050,000주 중 1,050,000주 (100.00%)

주식회사 코크렙제7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의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으로부터 당사 정관에 의거 직무수행자로 선임된 구태휴는 정관규정에 따라 의장석에 등단하여 위와 같이 법정 수에 달하게 출석하였으므로 본 총회가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선언하고, 금일 안건을 승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이어 의장은 의안을 부의하고 심의를 구하다.

■ 제1호 의안 : (조건부)정관 변경 승인의 건

의장은 (조건부)정관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별도 배부한 주주총회 회의자료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주주들의 심의를 구한 즉, 참석주주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함에 따라 제1호 의안을 별지와 같이 승인 가결하다.

의장은 이로서 금일 의안이 전부 종료되었음을 알리고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시간: 오후 3시 20분)
상기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다.

2026년 11월 13일

주식회사 코크렙제75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삼성동, 아이콘삼성)

법인이사 ㈜코람코자산신탁 (인)



주식회사 국토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정관 신구대조표

별지.

<table>
<tr><th>변경 전(제정)</th><th>변경 후(1차 개정(안))</th></tr>
<tr><td>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 1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이익(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 부투법 제 2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음) 범위에서 발행가액에 아래 표의 배당률(제 1 종 종류주식의 경우 3.40%를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년을 365 일로 하고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단, 윤년은 366 일로 한다). 단, 어느 사업연도 중 제1종 종류주식이 신규 발행된 경우, 그 신주의 배당률은 (본 항의 배당률 x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365 x 2)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tr><th>주식의 종류</th><th>배당률</th></tr><tr><td>제1종 종류주식</td><td>3.40%(1년으로 환산할 경우 6.80%)</td></tr><tr><td>보통주식</td><td>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당금에 따라 정함</td></tr></table>
④~⑥ 생략</td><td>제 8 조의 2 (종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생략

② 생략

③ 제 1 종 종류주식 및 보통주식의 배당금은 매 사업연도별 배당가능이익(상법 제 461 조의 2 에 따른 법정준비금의 감액으로 인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되거나, 부투법 제 28 조 제 3 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감가상각비 범위 내에서의 초과배당이 이루어지는 경우, 각 자본잉여금의 총 감소금액 및 감가상각누계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본조에서 같음) 범위에서 발행가액에 아래 표의 배당률(제 1 종 종류주식의 경우 4.00%를 말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1 년을 365 일로 하고 해당 결산기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다. 단, 윤년은 366 일로 한다). 단, 어느 사업연도 중 제1종 종류주식이 신규 발행된 경우, 그 신주의 배당률은 (본 항의 배당률 x 주금납입일의 익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일수 / 365 x 2)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able><tr><th>주식의 종류</th><th>배당률</th></tr><tr><td>제1종 종류주식</td><td>4.00%(1년으로 환산할 경우 8.00%)</td></tr><tr><td>보통주식</td><td>본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배당금에 따라 정함</td></tr></table>
④~⑥ 생략</td></tr>
<tr><td>-부 칙

2. <신 설></td><td>부 칙

2. (시행일) 1 차 개정 정관은 국토교통부 변경인가 완료일부터 시행하되 변경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적용하기로 한다.</td></tr>
</table>